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II. 주요내용

- 2026년도 평창군 기금조성 규모는 총 8개 기금 29,8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기금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 기 금 명 | 2025년도말 조 성 액 ^㉑ | 2026년 운용계획 | | 2026년도말 조 성 액 ^㉒ (^㉓ = ^㉑ + ^㉔ - ^㉕) | 증 감 ^㉖ (^㉖ = ^㉒ - ^㉑) |
|------------------------|-------------------------------|-----------------|-----------------|--|--|
| | | 수입 ^㉓ | 지출 ^㉔ | | |
| 합 계(8건) | 30,319,699 | 4,250,420 | 4,751,232 | 29,818,887 | △500,812 |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 81,164 | 1,836 | 0 | 83,000 | 1,836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13,876,111 | 314,638 | 0 | 14,190,749 | 314,638 |
| 평창군자활기금 | 530,831 | 14,142 | 29,000 | 515,973 | △14,858 |
|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 1,148,407 | 302,000 | 1,105,000 | 345,407 | △803,000 |
|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 1,797,896 | 544,530 | 35,000 | 2,307,426 | 509,530 |
| 평창군육외 광고발전기금 | 250,038 | 24,994 | 0 | 275,032 | 24,994 |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 1,738,600 | 527,736 | 900,000 | 1,366,336 | △372,264 |
|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 110,056 | 24,581 | 25,746 | 108,891 | △1,165 |
| 평창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 10,786,596 | 2,495,963 | 2,656,486 | 10,626,073 | △160,523 |

Ⅲ. 기금개요

□ 기금조성 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로 202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9,8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1백만원 감소

□ 기금운용계획 총괄¹⁾

- 2026년도 수입·지출계획은 총 34,570백만원이며,
 - 세입은 전입금 3,000백만원, 보조금 16백만원, 예치금 회수 30,320백만원, 이자수입 695백만원, 기타수입 539백만원 임.
 - 세출은 비용자성 사업비 4,726백만원, 용자성 사업비 25백만원, 예치금 29,819백만원 임.

□ 기금별 운용계획

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과)

- 설치목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용자
- 기금운용계획
 -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
|-------|--------|------|--------|
| 항 목 | 수입액 | 항 목 | 지출액 |
| 합 계 | 83,000 | 합 계 | 83,000 |
| 예치금회수 | 81,164 | 예치금 | 83,000 |
| 이자수입 | 1,836 | | |

- ▶ 수입은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81백만원, 이자 수입 2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83백만원 임.

1)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합계가 차이가 있음

나.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과)

○ 설치목적: 재정불균형 조정, 대규모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방채 상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안정적 재정운영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
|------------|-------------------|------------|-------------------|
| 항 목 | 수입액 | 항 목 | 지출액 |
| 합 계 | 14,190,749 | 합 계 | 14,190,749 |
| 예치금회수 | 13,876,111 | 예치금 | 14,190,749 |
| 이자수입 | 314,638 | | |

- ▶ 수입은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3,876백만원, 이자 수입 315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14,191백만원 임.

다. 평창군자활기금(복지정책과)

○ 설치목적 :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촉진(2022년 설치, 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
|------------|----------------|------------|----------------|
| 항 목 | 수입액 | 항 목 | 지출액 |
| 합 계 | 544,973 | 합 계 | 544,973 |
| 예치금회수 | 530,831 | 비용자성사업비 | 4,000 |
| 이자수입 | 14,142 | 융자성사업비 | 25,000 |
| | | 예치금 | 515,973 |

- ▶ 수입은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531백만원, 이자수입 14백만원이며,
- ▶ 지출은 사업자금대여 15백만원, 자활 성공수당 지원 3백만원, 자활 조성자금 대여 10백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1백만원, 예치금 516백만원 임.

라. 평창군고향사랑기금(세정과)

○ 설치목적 :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2023년 설치, 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
|------------|------------------|------------|------------------|
| 항 목 | 수입액 | 항 목 | 지출액 |
| 합 계 | 1,450,407 | 합 계 | 1,450,407 |
| 예치금회수 | 1,148,407 | 비용자성사업비 | 1,105,000 |
| 이자수입 | 2,000 | 예치금 | 345,407 |
| 기타수입 | 300,000 | | |

- ▶ 수입은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1,148,407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 기부금 300백만원이며,
- ▶ 지출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추진 55백만원,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980백만원, 평창FC유소년단 운영지원 50백만원, 예치금 345백만원 임.

마. 평창군체육진흥기금(올림픽체육과)

○ 설치목적 : 평창군 체육진흥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
|------------|------------------|------------|------------------|
| 항 목 | 수입액 | 항 목 | 지출액 |
| 합 계 | 2,342,426 | 합 계 | 2,342,426 |
| 전입금 | 500,000 | 비용자성사업비 | 35,000 |
| 예치금회수 | 1,797,896 | 예치금 | 2,307,426 |
| 이자수입 | 44,530 | | |

- ▶ 수입은 전입금 500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798백만원, 이자 수입 45백만원 임.
- ▶ 지출은 2026년 평창군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자 시상 35백만원, 예치금 2,307백만원 임.

바.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과)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지원(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
|------------|----------------|------------|----------------|
| 항 목 | 수입액 | 항 목 | 지출액 |
| 합 계 | 275,032 | 합 계 | 275,032 |
| 예치금회수 | 250,038 | 예치금 | 275,032 |
| 이자수입 | 994 | | |
| 기타수입 | 24,000 | | |

- ▶ 수입은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250백만원, 신고 수수료 24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275백만원 임.

사. 평창군재난관리기금(안전교통과)

○ 설치목적 :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
|------------|------------------|------------|------------------|
| 항 목 | 수입액 | 항 목 | 지출액 |
| 합 계 | 2,266,336 | 합 계 | 2,266,336 |
| 전입금 | 500,000 | 비용자성사업비 | 900,000 |
| 예치금회수 | 1,738,600 | 예치금 | 1,366,336 |
| 이자수입 | 27,736 | | |

- ▶ 수입은 전입금 500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739백만원, 이자수입 28백만원이며,
- ▶ 지출은 응급복구 및 재난대응 장비임차료 350백만원, 응급복구 및 재난대응 자재구입 250백만원, 상황실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 50백만원, 재난 대응 물품 및 장비 구입 50백만원, 일반예치금 452백만원, 의무예치금 914백만원 임.

아. 평창군식품진흥기금(보건정책과)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
|------------|----------------|------------|----------------|
| 항 목 | 수입액 | 항 목 | 지출액 |
| 합 계 | 134,637 | 합 계 | 134,637 |
| 보조금 | 16,100 | 비용자성사업비 | 25,746 |
| 예치금회수 | 110,056 | 예치금 | 108,891 |
| 이자수입 | 3,481 | | |
| 기타수입 | 5,000 | | |

- ▶ **수입**은 보조금 16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10백만원, 이자수입 3백만원, 과징금 5백만원 임.
- ▶ **지출**은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외 3개 사업에 24백만원,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 2백만원, 예치금 109백만원 임.

자.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유통과)

○ 설치목적 :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
|------------|-------------------|------------|-------------------|
| 항 목 | 수입액 | 항 목 | 지출액 |
| 합 계 | 13,282,559 | 합 계 | 13,282,559 |
| 전입금 | 2,000,000 | 비용자성사업비 | 2,656,486 |
| 예치금회수 | 10,786,596 | 예치금 | 10,626,073 |
| 이자수입 | 285,963 | | |
| 기타수입 | 210,000 | | |

- ▶ **수입**은 전입금 2,000백만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10,787백만원, 이자수입 286백만원,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210백만원이며,
- ▶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2,656백만원, 예치금 10,626백만원 임.

IV. 검토의견

○ 2026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8개를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501백만원이 감소한

29,819백만원 임.

○ 2026년도말 조성액을 기금별로 보면

| | |
|-------------------------|-----------|
| ▶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83백만원 |
| ▶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14,191백만원 |
| ▶ 평창군자활기금 | 516백만원 |
| ▶ 평창군고향사랑기금 | 345백만원 |
|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 2,307백만원 |
|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 275백만원 |
| ▶ 평창군재난관리기금 | 1,366백만원 |
| ▶ 평창군식품진흥기금 | 109백만원 |
|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 10,626백만원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34,570백만원으로

- ▶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30,320백만원(87.70%), 전입금 3,000백만원(8.68%), 이자수입 695백만원(2.01%), 기타수입 539백만원(1.56%), 보조금 16백만원(0.05%)이며,
- ▶ 지출은 예치금이 29,819백만원(86.26%), 자활성공수당지원 등의 자활사업,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추진 등의 고향사랑기금 사업, 2026년 평창군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자 시상, 으뜸음식점 지원 등 위생업소 개선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4,726백만원(13.67%), 자활 조성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 사업비가 25백만원(0.07%)으로 계획되어 있음.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말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은 없습니다.

▶ 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명 | 존속기한 | 관련규정 |
|---------------|--------------|-------------------------------------|
|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29. 12. 31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
| 평창군자활기금 | 법정기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 평창군고향사랑기금 | 법정기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 2028. 10. 16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3조 |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 법정기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평창군재난관리기금 | 법정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 평창군식품진흥기금 | 법정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 2029. 12. 31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을 보면,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2)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도 비육자성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추진 민간위탁금(55백만원),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실 내놀이터 조성(1,000백만원), 평창FC유소년단 운영지원(5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추진과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실내놀이터

2)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조성은 기금의 법적 목적에 부합하고 기존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아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되나, 평창FC유소년단 운영지원 사업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자수당 35백만원, 버스 임차료 15백만원, 생수구입비 3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평창UTD FC 유소년단 지원” 60백만원 중 동일 항목인 지도자수당 35백만원, 생수구입 30만원, 버스 임차료 15백만원과 동일한 내역으로 중복 편성된 사업이며, 320백만원을 편성한 도비보조사업에도 지도자수당 및 음료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³⁾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금사업을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단순 보조금 확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와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지정기부 모금액이 불확실하여 일반회계를 편성했으며 기금이 모금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적정하지 않은 예산편성 방식이며 기금사업은 기존 사업과 구분된 독자적 사업으로 구성하거나 모금 규모가 확인된 이후 추경을 통해 별도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면,

- ▶ 2025년도 말 250백만원을 조성하여 목표액의 1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2026년도 지출계획에 예치금만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현수막 게시대 확충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표지판 설치, 광고물 관리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목적

3)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단순 적립 중심의 운용이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도별 비용자성 사업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 사업내용 | 집행액 | 비고 |
|-------|-----------------|--------|----|
| 2026년 | 없음 | 0 | |
| 2025년 | 없음 | 0 | |
| 2024년 |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 지원 | 17,912 | |
| 2023년 | 없음 | 0 | |

-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출계획의 사업별 설명서 없이 제출되어 각 기금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작성·제출되는 사업 설명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금사업별 목적, 추진내용,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첨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 밖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